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 주요내용〉

-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대상 확대 (2종 추가)

① 美 관세 피해 · 애로기업 ('25년 한시) ②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2025. 6. 17.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단위 : 억원)

자금구분	자금별 규모(연간)	대출금리 (변동)	
		'25년	'24년
합 계	550		
창업	60	3.75%	4.0%
경쟁력강화	100	3.75%	4.0%
혁신형	100	3.25%	3.5%
기업회생	10	2.75%	3.0%
경영안정	260		
긴급경영안정	20	2~3%p 보전	2~3%p 보전

* '25.1.10일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기존 대출기업 '25.1.1~1.9, '24년 금리 적용)

2.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주식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http://sims.go.kr>) 을 통해 확인)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24년 신규 선정건부터 한도 적용

※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4. 지원조건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

①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7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75%,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10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7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75%,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10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3.2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2.75%,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⑤ 경영안정자금 : 260억원 규모

- 5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만15년 이상),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 한정) / 인증 유효기간 내
 - ※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직·간접 거래 포함),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1.0%p 추가 보전('25년 한시)

⑥ 긴급경영안정자금 : 20억원 규모

- 3억원
 - ※ 위메프·티몬 사태 등 직·간접 피해업체(중앙부처 미정산 피해 인정 쇼핑몰)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 1% 추가보전 : 경영안정자금과 동일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주의사항》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 · 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증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별도 공고에 의해 **분기별 대출 금리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합니다.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3년간)**
- 자금 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사업보고서** 필수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5. 신청 및 접수

접수기관 및 문의처	접수기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 (문의처) ☎ 044-251-3214 ◦ (주 소)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 2025. 12. 10.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②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m²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③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⑤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⑦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⑧ e커머스 피해 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⑨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6호)

⑩ 관세피해 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 시행완료 후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9호)

6. 융자대상자 선정

- 방 법 :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 보 : 15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①~④ 창업 외 4개 자금 협약은행(7개)』

- | | | | |
|--------|--------|--------|--------|
| ▶ 하나은행 | ▶ 신한은행 | ▶ 기업은행 | ▶ 국민은행 |
| ▶ 농협은행 | ▶ 우리은행 | ▶ 산업은행 | |

『⑤~⑥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11개)』

- | | | | |
|--------|--------|----------|--------|
| ▶ 하나은행 | ▶ 신한은행 | ▶ SC제일은행 | ▶ 신협은행 |
| ▶ 농협은행 | ▶ 우리은행 | ▶ 전북은행 | ▶ 수협은행 |
| ▶ 기업은행 | ▶ 국민은행 | ▶ 새마을금고 | |

※ 단,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별표 1】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 공통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업종	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근린 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품목코드 33402, 33409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 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 서비스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4, 5 참고

- *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별표 2】

자금별 지원조건

1.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

종 류	시 설 투 자 자 금	운 전 자 금
융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의 신설, 증·개축 소요자금 및 부지매입 비용 ※ 부지매입비는 공장 건축허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 기계설비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소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투자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융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융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 3.75% * '25.1.10일자 신규대출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2.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종 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
융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 이하 ※ 건당 1회
융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 3.25% * '25.1.10일자 신규대출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3. 기업회생자금

종 류	운 전 자 금
융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융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
융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리 2.75% * '25.1.10일자 신규대출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4. 경영안정자금

종 류	운 전 자 금		
융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융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10억원 		
융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변동금리)중 2.0%p 이차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23년 이후),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만15년 이상),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은 1.0%p 추가보전(1회에 한함) ※ 인증 유효기간 내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직·간접 거래 포함),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1.0%p 추가 보전(25년 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비교 시점</td>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td> </tr> </table> <p style="color: red;">※ 증빙서류 : 수출실적증명서(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 또는 피해 소명 자료</p> <p style="color: blue;">★ 관세조치 해제 등으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 변경 공고 없이 지원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비교 시점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비교 시점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대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5. 긴급경영안정자금

종 류	운 전 자 금
융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1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메프 또는 티몬 등 전자상거래로 인해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미정산 피해업체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쇼핑몰에 한함 <p>※ 증빙서류 : 온라인 쇼핑몰 거래내역, 기타 거래 증빙자료 등</p>
융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원 이하
융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변동금리)중 2.0%p 이차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추가보전 : 경영안정자금과 동일
대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비 고	

【별표 3】

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기업

가. 가점대상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 ②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첨부)(5점)
 - ③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5점)
 -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 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 ⑥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5점)
 - ⑦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2점)
 - ⑧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 ⑩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5점)
 - ⑪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 ⑫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점)
 - ⑬ 중소기업육성시책(해외시장개척, 수출기업인협의회 등) 참여기업(5점)
 - ⑭ PL보험 가입기업(2점)
 - ⑮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점)
 - ⑯ ISO, KC, GR, ISO9000:14000, TS16949 인증기업(3점)
 - ⑰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 ⑱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5점)
 - ⑲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교육필증 첨부)(5점)(1회로 한정한다)
 - ⑳ 지역인재 채용기업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미만(3점)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이상(5점)
 - ㉑ 스타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점)
 - ㉒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같은 항목 내에서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나. 감점대상

- ①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이상 95%이하(-5점)
- ②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미만(-10점)
- ③ 기타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별표 4】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대상 세부 업종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산업발전법 시행령 '22.7.5. 개정)

* 노란음영 : 지원업종

해 당 업 종	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G46
○전자상거래업	G4791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H529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J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J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1
○전기통신업	J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2
○정보서비스업	J63
○연구개발업	M70
○법무관련 서비스업	M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M712
○광고업	M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M714
○경영컨설팅업	M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2
○수의업(獸醫業)	M731
○전문디자인업	M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M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M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M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N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N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N75993
○포장 및 충전업	N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85503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6
○병원	Q861
○의원	Q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Q869

【별표 5】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

※ 주황음영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해당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 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 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별지 제1호】

중소기업(자금명 :)자금 신청서				[] 시설투자 [] 운전자금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자 :)			산업분류번호	
본사	(우편번호)	주소 :		전화 FAX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공장	(우편번호)	주소 :		전화 FAX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면적	대지 : 공장 : m^2 m^2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지역) 기타지역()
연락처	담당자	휴대폰		전화(FAX)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E-mail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금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천불
소요자금	백만원			신청액	계 백만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시설투자 운전자금 (자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벤처기업번호		부채비율		건축허가번호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대출은행 협의내용	은행 지점 (담당:)	대출가능() 대출불가()	보증기관 협의내용	보증기금(담당:) 보증재단(담당:)	보증가능() 보증불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응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대표) 년 월 일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 m^2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5.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6.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7.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8.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각1부.

※ 주의사항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용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등 기재)

-
-
-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2. 업체개요

년 월 일	연 혁	비 고

*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3.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자 택 전화번호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수학 상태
	~	()대 학 교		졸업(), 중퇴()
	~	()고등학교		졸업(), 중퇴()
경력	기 간	기 업 체 명	주 생 산 품 목	담당업무(직위)
	~			
	~			
	~			
포 상 (업체포상 포함)		수 여 기 관 명	포 상 명	분 야

4. 공장 규모 등

공장 규모(소유)	공장등록	미등록시 이전계획
대지 m ² 자가(), 임차()	등록()	이전시기 :
건물 m ² 자가(), 임차()	미등록()	이전장소 :

5. 주요 보유시설

(단위 : 백만원)

시설명	규격	수량	설치년도	구입금액
합계				

6. 규격표시 획득 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인기관	허가(승인)일자

주) 규격표시명 : KS, JIS, CE등 국내·외 규격, 검, Q Mark등 품질인증, 전·열등형식승인 등

7.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종류	고안의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고안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전용시권자

8. 기술인력 보유현황

직 위	성 명	이공계 전공학과	기술자격	등록기관

※ 기술자격 기재(기술사, 기능장, 기사 1·2급, 기능사 등)

9. 제품개요 및 판매전망

제품의 개 요	
판 매 전 망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10. 주요 거래처(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대표자	거래품목	거래금액 (비율%)	거래기간	거래조건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1.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품 목	전년도(전기)		신청년도(당기)		다음년도(차기)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국 내						
수 출						
합 계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2. 시설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신청금액의 시설금액과 근사치로 작성

13. 회사약도 및 책임자

1. 업체명 : (주)_____ (대표자 :)

2. 책임자 : _____ (직위:)

3. 전화번호(휴대폰, 연락처 등) :

4. 회사약도

【별지 제2호】

경영안정 · 기업회생지원자금 신청서

업체명				사업자 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전화번호	
자금담당자			휴대폰	이메일	
용자 신청액	일반	백만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특별	백만원			
자금용자 희망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시 이자보전 연리 2.0%	
기업 형태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금액 구분 : 일반기업(), 수출기업() · 이자보전 구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기타 기업() 				
자금 용도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 지불, 기타()				

《 경영현황 》

업종		주요 생산품		연간 생산액	
공장 장지	개별, 산업 · 농공단지명()			상시 근로자	생산직 사무직 명명
자총 산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부채	백만원
대출 은행	은행 지점 (주소 :)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6.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7.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8.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 (지적재산권 사본,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각1부.

※ 주의사항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안정 · 기업회생 자금 사업계획서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개요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시설자금 :
 - 운전자금 :
 - .재료비
 - .인건비
 - .일반관리비
- 소요자금 조달방법
 - 자기자본 :
 - 융자 :
 - 사채 :
 - 기타 :
- 융자금 상환계획
- 기타

【별지 제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을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

본인은 위메프·티몬 등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유의사항 및 자금 지원기준을 확인하였고, 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원활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2025. . .

(신청인) 기업명 : (인)

주소 :

대표자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5호】

e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실 확인서

피해내용 (구체적 명시)	
<p>위의 내용과 같이 위메프·티몬 등 사태 피해 사실을 제출하오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p> <p>2025. . .</p> <p>업체명 : 대표 (인)</p> <p>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p>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

본인은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유의사항 및 자금 지원기준을 확인하였고, 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원활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2025. . .

(신청인) 기업명 : (인)

주소 :

대표자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7호】

관세피해 사실 확인서

피해내용 (구체적 명시)	
<p>위의 내용과 같이 관세피해 사실을 제출하오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p> <p>2025. . .</p> <p>업체명 : 대표 (인)</p> <p>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p>	

【별지 제9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

1.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고용인원/매출	명/ 백만원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주 生 산 품			

2. 자금 선정 및 실행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원 년 도	융자 추천 금액			대출 실행 금액(업체)			대 출 실행일	비 고
	계	시 설	운 전	계	시 설	운 전		

3. 시설설치 내역(시설자금 이용업체만 기재)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규 格	수 량	금 액	시 설 업체명	추진기간

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효과 및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 分	자금실행 전	자금실행 후	증감 효과
매 출 증 가			
고 용 인 원			
생 산 성			
기타()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